

<별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가.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

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운용하고 있을 것

1)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이 경우 제2호다목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

2) 예금

제7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외화(제30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의 통화로 한정한다)로 표시된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다음 각 목의 증권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외국정부가 자국의 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국채증권

나. 외국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중 자국의 통화로 표시하여 발행된 채무증권

다. 외국 중앙은행이 자국의 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채무증권

제80조제1항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부동산 또는 나목에 따른 특별자산”을 “다음의 자산”으로 하며,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동산(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을 말한다)

2) 나목에 따른 특별자산

3) 제5호다목에 따른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

제80조제1항제5호의3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5호다목에 따른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하는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제8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6개월

2.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처분이 가능한 시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이 제2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인

경우: 처분이 가능한 시기(처분이 가능한 시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충족하는”을 “갖춘”으로 하고, 같

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충족할”을

“갖출”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존속기한을 1년 이상으로 설정·

설립할 것

1)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2)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

기구로서 설정·설립한 이후에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를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법 제230조제3항”

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9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부분 중 “1년”을 각각 “1년(영 제81조제3

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제118조의1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법인인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8조의16제3항제2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나.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주권이 거래되

는 법인

다. 모집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법인

제121조제1항제5호가목 중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09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투자신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계열회사, 투자설명서상 집합투자재산

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매수 계획으로서 매수

규모·기간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계획을 수립할 것

나.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중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설립된 이후 1년이 지난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중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하일 것.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은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9조제1호의2(중전의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1호 각 목의 요건. 이 경우 제1호가목 중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이사”로 본다.

제209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 신청 당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을 “다음 각 목의 요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등록 신청 당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제1호 각 목의 요건. 이 경우 제1호가목 중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로, “매수”는 “출자”로 본다.

제2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

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09조제1호가목, 같은 조 제1호의2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매수 계획서 및 집합투자기구 출자 계획서
제2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의 부분 중 “1년”을 각각 “1년(영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제2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투자회사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제2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다음 각 호의 단기금융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단기금융상품에 준하는 것으로서 외화(제30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의 통화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표시된 단기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기금융상품

제2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목의”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목의”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으로, “나목”을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중 원화로 표시된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투자자가 개인으로만 이루어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중 외화로 표시된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천5백억원 이상

다. 투자자가 법인으로만 이루어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중 원화로 표시된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5천억원 이상

라. 투자자가 법인으로만 이루어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중 외화로 표시된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천5백억원 이상

제241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다음 각 목의 단기금융상품 중 하나의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할 것

가. 외화 중 하나의 통화로 표시된 단기금융상품

나. 원화로 표시된 단기금융상품

제242조제1항제1호 중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이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243조제3항 중 “차이를 설명하여야”를 “차이(투자자의 예상투자기간 등을 고려한 예상 판매 수수료·보수와 수수료·보수별 차이점을 포함한다)를 설명해야”로 한다.

제25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로서 환매대금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마련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 제77조제1항제2호나목1)후단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

나. 예금 인출

제271조의20제3항 중 “제2호 또는 제3호”를 “제2호, 제3호 또는 제13호”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다음 각 호의 기준(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제2호의 기준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0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

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를 중지하려는”을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를 중지하려는 경우
- 나. 제301조제2항 각 호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던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대상을 다른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전환하려는 경우
- 별표20의 142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존 142의8 내지 142의10을 각각 142의9내지 142의11로 한다.

142의8. 제271조의20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과 관련한 심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09조 및 제2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류형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적용례) 제2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7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u><신설></u>	제77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u> 가.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 나. <u>집합투자자산을 다음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운용하고 있을 것</u> 1)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이 경우 제2호다목에 따른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 2) 예금 ② -----
②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서	② -----

집합투자기구 등의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부동산 또는 나목에 따른 특별자산에 자산총액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 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 구(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 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 한다)	다. <u>다음의 자산</u> ----- ----- ----- ----- ----- ----- ----- ----- ----- -----
<신 설>	1) 부동산(법 제229조제2호 에 따른 부동산을 말한 다)
<신 설>	2) 나목에 따른 특별자산
<신 설>	3) 제5호다목에 따른 특별 자산투자목적회사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제5호다목에 따른 특별자 산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하 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5의4. ~ 12. (생 략)	5의4. ~ 12.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①·② (생 략)	한도 초과사유 등)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란 3개 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 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 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 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가 지)를 말한다.	③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 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의 경우: 6개월 2.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 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 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 산의 경우: 처분이 가능한 시 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 고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이 제2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인 경우: 처분이 가능한 시기(처분이 가능한 시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는 6개월)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u>속기한을 1년 이상으로 설정·설립할 것</u>	<u>금지형집합투자기구</u>
제88조(성과보수의 제한) ① 법 제8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8조(성과보수의 제한) ① ----- ----- ----- <u>갖춘</u> ----- ----- ----- ----- -----.		2)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 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서 <u>설정·설립한 이후에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u>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3. <u>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일정 성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u>	<삭제>	6. (생략)	6. (현행과 같음)
4. 삭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5.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5. ----- ----- -- <u>갖출</u> --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 ① 법 제8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 ① ----- ----- <u>다음 각 호의</u> ----- -----.
가.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 금지형집합투자기구(이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인 경우: 최소 존	가. 다음의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존속기한을 1년 이상으로 설정·설립할 것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1)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	3. 집합투자업자가 <u>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u>	3. ----- <u>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같은 조 제3항</u> ----- ----- ----- ----- ----- -----

<u>완료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3. (생 략) ④ ~ ⑥ (생 략) 제121조(일괄신고서) ①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11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한다. 1. ~ 4. (생 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장에서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가. <u>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u>	가. <u>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u> 나. <u>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주권이 거래되는 법인</u> 다. <u>모집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법인</u> 3.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1조(일괄신고서) ①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가. <u>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u>----- -----		나. (생 략) ② ~ ⑧ (생 략) 제209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법 제18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u><신 설></u>	나.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09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 ----- ----- 1. 투자신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u>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계열회사, 투자설명서상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매수 계획으로서 매수 규모·기간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계획을 수립할 것</u> 나. <u>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중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설립된 이후 1년이</u>
---	--	--	--	---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를 <u>확인하여야</u> 한 다.	----- ----- -- <u>확인해야</u> -----.
1. ~ 4. (생략) <u><신설></u>	1. ~ 4. (현행과 같음) 5. <u>제209조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매수 계획서 및 집합투자기구 출자 계획서</u>
6. (생략) ③ ~ ⑧ (생략) 제217조(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법 제188조제2항제4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u><단서 신설></u>	6.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17조(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 ----- -----. <u>다만, 수익자 보호 및 투자신탁 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만 해당한다.</u>
1. ~ 6. (생략)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 유)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 ~ 6. (현행과 같음)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 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 ----- -----
1. · 2. (생략)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 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설정 한 후 <u>1년</u> 이 되는 날에 원본액 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1. · 2. (현행과 같음) 3. ----- ----- ----- ----- ---- <u>1년(영 제81조제3항제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 는 2년)</u> ----- -----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u>1년</u>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 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 만인 경우	4. ----- ----- <u>1년(영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 기구의 경우에는 2년)</u> ----- ----- -----
제229조(정관의 변경) ① 법 제19 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u><단서 신 설></u>	제229조(정관의 변경) ① ----- ----- ----- ----- ----- <u>. 다만, 수익 자 보호 및 투자회사재산의 안 정적인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u>

	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제76조제2항에 따라 판매가 제한되거나 법 제237조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거나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부터 그 운용업무의 위탁을 받지 아니할 것. 다만,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거나 그 운용업무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나목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법 제238조제1항 단서의 집합투자 재산 평가방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다음 각 목의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구분에 따른
①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이란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 ----- 다음 각 호의 단기금융상품----- -----.			않을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단기금융상품에 준하는 것으로서 외화(제301조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의 통화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표시된 단기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기금융상품			다음
②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다목 및 라목
4.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법	4. -----			가. -----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이 있다는 사실과 각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의 <u>차이를 설명하여야</u> 한다.	③ ----- ----- ----- ----- ----- ----- 차이(투자자의 예상투자기간 등을 고려한 예상 판매 수수료·보수와 수수료· 보수별 차이점을 포함한다)를 설명해야 -----.
④·⑤ (생략) 제255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① 법 제236조제1항 단서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로서 환매청구일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 에 환매한다는 내용을 집합투자 규약에 정한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u><신설></u>	④·⑤ (현행과 같음) 제255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①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제7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로서 환매대금 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마 련하여 지급하는 경우

② ~ ⑤ (생략)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 호 또는 제3호의 법률에서 규정 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 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 두 충족하는 업무집행사원과 제 1항 제7호(「여신전문금융업 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 자로 한정한다)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에 따른 법률에서 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업무집행사원은 법 제249조의1 2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기관전 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가. 제77조제1항제2호나목1) 후단에 따른 단기금융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을 환매 나. 예금 인출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 호, 제3호 또는 제13호----- ----- 다음 각 호의 기준(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출자 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재 산을 운용하는 경우로서 금융위 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제2 호의 기준으로 한정한다)----- ----- ----- ----- ----- -----.
--	--

1.·2. (생 략) 제304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법 제28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1.·2. (생 략) 3. <u>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를 중지하려는 경우로서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u> <u><신 설></u> <u><신 설></u> [별표20]	1.·2. (현행과 같음) 제304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 ----- ---- <u>다음 각 호의</u> ----- -----. 1.·2. (현행과 같음) 3. <u>다음 각 목의</u> ----- ----- ----- ----- ----- ----- 가. <u>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를 중지하려는 경우</u> 나. <u>제301조제2항 각 호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던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대상을 다른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전환하려는 경우</u> 142의8. <u>제271조의20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과 관련한 심사</u>
--	---

142의8. (생 략)	142의9. (현행 142호의8과 같음)
142의9. (생 략)	142의10. (현행 142호의9와 같음)
142의10. (생 략)	142의11. (현행 142호의10과 같음)